



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

[시행 2021. 1. 1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52호, 2020. 12. 29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(산재보상정책과), 044-202-8839, 8832

I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

전문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과 가족·기타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 원)

구 분	상시간병급여	수시간병급여
전문간병인	44,760	29,840
가족·기타간병인	41,170	27,450

* 전문간병인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II. 행정사항

1. 시행일

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재검토기한

고용노동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